

자연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55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솔찬’ 부분개정 (2024.01.17.)

목차

제1장 총칙	1~6
제2장 자연과학대학 감사특별위원회	7~14
제3장 감사	15~24
제4장 징계	25~38
제5장 사업 및 감사 진행 방법	39~74
제6장 재심의	75~78
제7장 규칙	7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학생자치기구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으로 학우들의 자치기구로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감사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학과 학생회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원칙) 감사의 시행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4조(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18조(감사)”에 규정된 사항과 본 세칙에 따른다.

제4조(의무)

① 자연과학대학 감사특별위원회와 위원들은 감사업무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인임을 자각하고 이전여 자연과학대학 학우들의 대리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본 세칙의 관리 및 수호에 의무가 있다.

제5조(조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55조(감사)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6조(감사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8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제보, 대자보, 연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2장 자연과학대학 감사특별위원회

제7조(명칭) 본회는 자연과학대학 감사특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8조(지위)

① 본회는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의 특별기구이다.

② 본회는 직무와 운영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9조(권한) 본회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감사
2. 학과 학생회의 사업 감사
3. 학과 학생회의 모든 재정 감사

제10조(구성)

① 본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2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총 대의원 2/3 이상의 감사 특별위원(이하 “감특위원”이라 함)과 대의원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단, 감특위원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1조(구성 시기) 본회는 정기감사 시행 15일 전까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이 구성한다. 특별감사 시행에 대해서는 구성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12조(권한대행) 자연과학대학 감사 특별위원장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연과학대학 감사 특별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결위 시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3조(임기) 본회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결과 공고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재적 감특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제3장 감사

제15조(대상) 본회의 감사 대상(이하 “피감사기구”라 한다)은 자연과학대학 학과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시기)

- ① 정기감사는 분기별로 총 4회 시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는 감사가 결정된 경우에 시행하며 본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17조(일정)

- ① 본회는 정기감사의 일정 통보와 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을 감사 시행 15일 전까지, 특별감사의 경우 8일 전까지 피감사기구에 통보한다. 단, 제보에 의한 특별감사의 경우 시행일에 통보 후 진행할 수 있다.
- ② 피감사기구는 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지정한 일까지 본회로 제출하고 감특위원의 확인 후 확인서를 제출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에 기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 ④ 본회는 감사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감사기구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피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의 요청을 진행한다.
- ⑥ 본회는 지적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감사자료와 제출된 추가자료, 기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사기구의 감사 및 징계 결과를 확정한다.
- ⑦ 본회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48시간 이내에 감사 및 징계 결과를 공지한다. 단, 징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8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준)

본회의 모든 감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각 학과의 학우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는가?
2. 학생회칙을 준수하였는가?
3.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는 어떠한가?
4. 계획한 사업의 이행 정도는 어떠한가?
5.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6. 회계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으며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7. 간이영수증 비율이 감사 해당 기간 내 전체 지출의 5%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8. 재정의 남용, 낭비, 잘못된 계약이나 구매 행위는 없었는가?
9.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지출은 적당한 것인가?
10. 자치기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 수렴을 거쳤는가?
11. 모든 사업실시에 대하여 학우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졌는가?
12.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자료) 본회는 피감사기구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자료는 감사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 ①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감사

1. 공약 이행 계획서(연별)
 2. 공약 이행서(분기별)
- ② 학과 학생회 사업 감사
1. 사업계획서(행사별)
 2. 사업평가서(행사별)
 3. 답사 계획, 확인서(행사별)
 4. 회식 확인서(행사별)
 5. 상품수령증(행사별)
 6. 각종 공문철(수발신, 내부결재) 및 회의록(분기별)
- ③ 학과 학생회 모든 재정 감사
1. 회비 입금자 명단
 2. 통장 사본(분기별)
 3. 세입세출계산서(분기별)
 4. 영수증첩(행사별)
 5. 계좌이체 관련 자세한 자료(행사별)
 - 가. 계좌이체 영수증
 - 나. 사업자등록증 및 세부계약서
 - 다. 명세표
 6. 간이비율 제외 요청서(행사별)
- ④ 기타
1. 자치기구 조직도
 2. 사유서
 3. 수정 내역서
 4.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

제20조(방법) 감사는 선거 공약 감사, 사업 감사, 회계 감사로 구분하며 제출 서류의 심사에 의한다. 단, 본회는 필요하면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를 포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① 자료 준비 및 감사 관련 사항은 “제5장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 시행”을 따른다.
- ② 제출 서류의 심사에 의한 감사 종료 이후 필요에 따라 실사를 포함한 기타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추가 감사 이전에 피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결과)

- ① 본회는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감사기구의 관계자(회장과 부회장, 해당 기구 집행부 중에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본회는 감사를 시행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감사기구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필요한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감사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피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 ④ 피감사기구의 장은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소명하여야 한다.
- ⑤ 본회는 미비점을 통보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감사자료와 제출된 추가자료, 기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사기구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제22조(결과 보고)

- ① 본회는 감사 시행이 완료된 후 제출된 감사 결과 자료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감특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감특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반드시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학우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공개 및 보존)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자료, 회의록을 포함한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여 학우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① 전체감사자료집의 보존 기한은 최소 다음 3개년으로 한다.
- ② 세입세출계산서의 경우 영구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한다.
- ③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열람할 수 없게 한다. 단, 해당 여부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4조(재심의) 재심의는 지적사항 재심의와 징계 재심의로 구분한다. 재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장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제4장 징계

제1절 징계 총칙

제25조(목적)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피감사기구를 문책하고 벌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 지적사항을 바로잡도록 촉구하고 반성 및 전진의 계기를 주어서 사업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돋는 것에 있다.

제26조(발효) 본회에서 의결된 징계는 해당 피감사기구에 징계 결과가 의결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단, 제30조 11호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직후에 발효된다.

제27조(징계의 유효기간) 산정된 징계는 임기 동안 누적 적용된다.

제28조(이월) 현 학생회는 이듬해 신임 기구가 존재할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사를 함께 진행하며, 최대 주의 2회까지 신임 기구로 징계를 이월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신임 기구에 대한 이월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29조(징계 이행) 피감사기구의 징계 이행은 징계 결과가 피감사기구에 통보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미이행으로 간주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호로 구분한다.

1. 미비점
2. 미비]
3. 주의
4. 경고
5. 회식 제한
6. 사과문 게시

7. 물질적 보상
8. 예산집행정지: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무기한
9. 집행부의 해산 및 집행부원 해임
10. 예산 회수
11. 해당 자치기구장에 대한 탄핵발의
12. 피감사기구에 대한 학칙에 의한 처벌 요구 및 형사 고발

제2절 징계의 기준과 사유

제31조(징계 산정 방법) 징계는 다음의 기준과 사유를 따라 본회의 의결로 산정한다.

제32조(미비점) 미비의 하위 징계로 단순한 오기재, 미기입 등에 대해 산정한다.

- ① 미비점의 수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 의결을 통해 미비 이상의 징계를 산정한다.
- ②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적절한 경우 참작할 수 있다. 단, 1항에 의한 징계는 예외로 한다.

제33조(미비) 형식상의 오류, 금액 기입오류, 내용 부실 등에 대해 산정한다.

- ① 미비를 받은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주의 1회로 대처한다.
- ② 남은 미비에 대해 다음 감사로 이월하지 않는다. 단, 1항에 의한 징계는 예외로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 미비 1회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온라인 제출본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2. 제출된 자료에 다수의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제34조(주의) 본격적인 징계로 기한 초과, 금액 누락, 자료 누락 등을 포함한다.

- ① 주의를 받은 횟수가 3회가 되는 시점은 경고 1회로 대처한다.
- ② 주의 이상의 징계는 임기 동안 누적 적용한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주의 1회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자료를 미제출(누락, 기한 초과)하였을 경우
 2. 간이영수증 비율이 5%를 초과했을 경우
 3. 계획서의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4. 실제 지출 비용이 예상 비용 대비 10% 이상 차이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5. 제출한 세입세출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6. 피감사기구 중 참석이 필요한 자가 불참하였을 경우
 7. 예산의 집행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일 경우
 8. 사업의 집행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9. 집행부서장들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10. 통보된 지적사항을 미수정한 경우
 11. 선거 공약의 다수가 미이행된 경우

제35조(경고) 주의의 상위 징계로 회칙 및 세칙 위반, 감사 불응 등을 포함한다.

- ① 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 정지 2주를 시작하며, 이후 누적된 경고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② 한 학기 기준으로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제30조 5호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 경고 1회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작성한 경우
 2. 피감사기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한 경우
 3. 피감사기구 중 참석이 필요한 자가 2차 이상 불참한 경우 가산한다.
 4. 감사자료 및 결과 공개 명령에 불응한 경우
 5. 현금인출 및 운용을 하는 경우
 6.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7.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8. 감사의 징계를 피감사기구 또는 피감사기구의 장이 미이행한 경우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경고 2회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자료 및 결과 공개 명령에 2차 이상 불응한 경우
 2. 학생회비를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한 경우

제3절 특별사항

제36조(예외 사항)

- ①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② 온라인으로 제출본에 대해 감사 때 수정 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감할 수 있다.
- ③ 제3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증감할 수 있다.
- ④ 제34조 3항 11호의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 ⑤ 천재지변, 감염병 사태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⑥ 중대한 사안 혹은 특별감사의 경우 제30조 1호와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정의)

- ① 회식 제한이란 제54조 5항에서 정의한 학생회 회식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미 회식을 진행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사비 반환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 ② 사과문 게시란 징계를 받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사과문을 상세히 서술해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사과문은 게시 전 본회의 검토를 거치며 48시간 이내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③ 예산 집행 정지란 지정된 기간(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무기한)에 대해 예산 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예산 회수란 해당 학생회의 모든 예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해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회수부터의 징계는 해당 학생회의 집행통장 및 카드를 대의원회에서 압류한다.
- ⑤ 물질적 보상이란 모든 학생회비와 비품에 대해 손실을 일으켰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성 사업 역시 손실을 일으켰을 경우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징계 재심의 절차는 제6장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제5장 사업 및 감사 진행 방법

제1절 기본 원칙

제39조(원칙) 모든 학생회비의 쓰임에 대해 사업평가서와 영수증철을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사업별 반영 사항) 사업별로 기한, 제출 횟수, 예외 사항 등을 반영해 제출한다.

제41조(기한 구분) 분기별 결산기준일까지 모든 감사자료를 해당 분기 감사 때 제출한다.

제42조(사업의 종료일) 모든 사업의 종료일은 사업으로 구매한 물품이 모두 소진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본 조의 내용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절 선거 공약 감사

제43조(공약이행계획서) 공약의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 3월에 1회 세부 사항을 포함한 공약 이행 계획서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후, 정기감사 때 추가로 제출한다. 단, 공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의 감사자료 제출일에 수정 제출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공약이행서) 실질적인 공약 시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과 학생회장단은 선거 공약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공약 이행과정을 포함한 공약이행서를 제출한다.

제45조(감사 방법) 본회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자세히 검토, 공약준수사항을 평가해 공약이행 평가서를 작성 후 게시한다.

제3절 사업 감사

제46조(적용 범위) 피감사기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행은 금한다.

제47조(사유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유서 제출이 명기된 조항 외에도 특정 사건 발생 시, 경위 가 담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48조(자필 서명의 원칙) 모든 사업실시에 대해 자필 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제출만 전자서명을 허용한다.

제49조(사업의 공지) 사업 진행 시, 전 학우가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지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제50조(수익 항목) 수익 항목(학과 지원금, 외부 업체, 행사 수입 등)에 대해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사업계획서는 각 사업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목적, 예상 일정 및 예산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학과 대의원의 승인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각 사업의 최초결제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 (세부 일정, 행사 대상, 기대 효과, 시안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단, 사업의 시행이

최초결제일 이전인 경우, 사업 시행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업무와 관련된 사무용품,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또는 수리, 학생회비 납부 및 반환, 정기 결제건, 사비 반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③ 학생회비로 학과 소모임, 동아리 대상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일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요청서를 통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식 지원은 제54조를 따른다.
 - ④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는 해당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제출 후, 정기감사 때 추가로 제출한다.
- 제52조(사업평가서의 제출)** 사업평가서는 각 사업 종료 후 8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결과와 사업 관련 세부 예산 집행내용, 평가 및 분석, 사진, 최종안(제작 및 인쇄 관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사업이 결산기준일을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해당 정기감사 결산기준일까지의 사업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감사 기간에 최초 사업계획서와 최종 사업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 3항 4호(10%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평가서에 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답사 규정) 사업실시에 대한 사전 답사(유류비, 급양비를 포함한 사업실시 이전의 집행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 ① 학과 전 학우를 위한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1회 4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사전답사 비용은 교통비, 식사비의 항목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최대 200,000원으로 제한한다.
- ③ 식사비는 인당 10,000원, 최대 40,000원으로 제한한다.
- ④ 교통비는 차량 대여 비용, 통행료, 유류비를 포함한다.
- ⑤ 사전답사의 경우 답사계획서와 평가서에 명단을 포함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회식 규정) 학생회비로 집행하는 학과 회식은 단체 회식, 학생회 회식으로 구분한다.

- ① 단체 회식은 개강총회·동아리·소모임을 포함한다.
- ② 단체 회식은 학교 혹은 학과 공식 행사 후 진행할 수 있다. 단, 동아리·소모임의 경우, 한 학기에 최대 1회의 학생회비 지원이 가능하다.
- ③ 단체 회식의 경우, 전체 학과 학우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학생회 인원만 참여하는 것은 금한다.
- ④ 단체 회식의 경우, 평가서에 명단, 회식 사진을 포함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식 사진은 참석자의 명단과 참석자 모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학생회 회식의 경우, 한 학기에 최대 1회로 회장단 및 집행부에 한하며 인당 최대 20,000원으로 제한한다. 단, 차기 학생자치기구 임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의 경우 예외로 둔다.
- ⑥ 학생회 회식의 경우, 계획서를 생략하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 후 가능하며, 회식확인서에 명단과 서명, 소요 예산, 참석자 모두를 식별할 수 있는 회식 사진을 포함해 제출한다.

제55조(경품추첨 규정) 경품추첨과 같은 사업실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 ① 상품 구매 및 지급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해당 사업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지와 경품추첨 과정이 전체 학우가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② 상품 수령 시, 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상품 수령 대상이 10명 이

상일 경우 불특정다수 상품수령증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상품은 해당 사업 기간 내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소진이 어려우면 다음 사업에 인계하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전체 공지 후에 중복 수령을 허용 하며 사유서를 제출한다.
- ④ 경품추첨 결과 상품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재추첨을 통해 수령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사유를 사업평가서에 기재한다.

제56조(학생회비 반환 규정) 학생회비 반환을 하고자 할 때는 학생회비 납입 증명서(단, 계좌이체 영수증 제외), 재적증명서, 이체 확인서(명세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를 제출한다.

- ① 반환은 자퇴, 전과, 편입에 의한 경우만 허용한다.
- ② 반환 금액을 학기당 비율에 맞춰 반환해야 한다.

제57조(사비 반환 규정) 사비 반환을 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체확인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58조(공문철 제출 규정) 각종 공문철 및 회의록은 분기별로 정리해 제출한다.

제59조(이외 규정)

- ① 화투 등의 사행성 물품과 경조사비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② 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출 서류의 양식 및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4절 회계 감사

제60조(회계 감사의 대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51조(재월), 제52조(자체조달경비)에 규정 된 경비를 포함한 피감사기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재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61조(학생회비 납부자 명단) 피감사기구는 첫 감사 시,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제출한다. 단, 1차 감사 후 변경 사항 발생 시 최신화하여 해당 정기감사에 제출한다.

제62조(집행통장) 집행통장과 카드는 각 한 개로 제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 ① 통장 사본은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포함된 앞면을 꼭 제출해야 하며, 전자 명세서나 캡처본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0조 2항에 규정된 특별통장은 기존 잔액을 모두 소진한 후에 운용할 수 있으며 통장 사본을 꼭 제출한다.
 - 가. 특별통장은 하나의 목적으로만 운용 후 해지하여야 한다.
 - 나. 특별통장은 학생회비 및 참가비 수납, 수익성 사업 진행 시 운용할 수 있다.

제63조(현금 운용의 금지) 예산의 현금인출 및 운용은 금하고, 예산의 집행은 카드 결제를 원칙 으로 한다.

제64조(세입세출계산서) 세입세출계산서의 2·3·4차 감사 시에는 상단에 직전 감사의 이월금 항목 을 작성하며 제출 시 대면과 온라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65조(영수증) 영수증은 실물 영수증을 영수증철에 부착하며, 항목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세부 항목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영수증철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다.

제66조(자료 제출 기한) 기한은 이전 분기 감사 결산일 다음 날로부터 해당 감사 결산일까지로 한다.

제67조(수익사업) 수익사업에 관하여 상세 자료(업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계약) 전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후원 계약, 축제주점 운영 등 기타 교내 수익사업을 포함한다.

제68조(간이영수증) 제18조 7호에서 간이영수증 비율이란 계좌이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한 경우로 반드시 자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간이영수증 비율에서 제외한다.

- ① 계좌이체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② 학교 구성원 내 계좌이체(학생회·행정실·사비 등)의 경우
- ③ 학과 전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MT 및 단체 유니폼의 경우
- ④ 간이영수증 비율 제외 요청 후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제69조(계좌이체 거래) 계좌이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한 항목은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계좌이체 영수증, 사업평가서, 통장 사본 등 자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단, 계좌이체 영수증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학교 구성원 내 계좌이체의 경우 피감사기구가 발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외의 계좌이체 관련 서류는 생략한다.

제70조(간이영수증 비율 제외 요청) 제68조 4항의 요청은 다음 항에 따라 진행한다.

- ① 카드 결제, 전자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집행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 항목으로 인정한다.
- ② 피감사기구는 간이영수증 비율 예외 항목 요청을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에 최초결제일의 3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의 시행이 최초결제일 이전이면 사업 시행 3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③ 예외 항목에 대한 의결은 자연과학대학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1조(결제 취소) 결제 취소의 경우, 취소 사업평가서와 취소 영수증, 해당 경위가 담긴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5절 4차 감사 진행

제72조(사업 진행 및 징계) 4차 감사의 결과로 결산일 이후의 사업 진행 여부와 신임 기구로 이월하는 징계의 정도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73조(예산) 4차 감사 기간에 예산은 각 신임 기구로 이월하고 당사자의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74조(서류) 4차 감사 결산일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의 제반 서류는 신임 기구로 이월하여야 하며,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듬해 1차 감사에 포함된다.

제6장 재심의

제75조(구분) 재심의는 지적사항 재심의와 징계 재심의로 구분한다.

제76조(지적사항 재심의) 지적사항 재심의는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제출 기간 중 피감사기구 혹은 감특위원이 본회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정상 참작을 위한 내용

제77조(징계 재심의) 징계 재심의는 감사 결과 확정 이후 72시간 이내에 피감사기구 혹은 감특위 원이 본회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 포함하여야 한다. 단, 탄핵 및 형사 고발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불허한다.

1. 재심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징계 등 의결서 사본
3. 정상 참작을 위한 내용

제7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 ① 본회는 접수된 재심의 청구가 다음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1. 재심의 청구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2. 필요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본회는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 ③ 본회는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청 구를 제출한 피감사기구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규칙

제79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0조(개정 발의) 이 세칙의 개정 발의는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의 요구와 대의원회 과반 수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81조(개정) 개정 발의된 세칙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효한다.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충남대학
교자연과
의장학대
의원장인

세칙 개정 계보

- [2014.01.27., 일부개정] 제45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 [2015.01.26., 전면개정] 제46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 [2016.02.11., 일부개정] 제47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CLEAN’
- [2016.04.14., 일부개정] 제47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CLEAN’
- [2017.04.12., 일부개정] 제48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미드We’
- [2018.02.08., 일부개정] 제49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참빛’
- [2019.02.20., 일부개정] 제50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맑음’
- [2019.05.22., 일부개정] 제50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맑음’
- [2020.12.23., 일부개정] 제51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하늘’
- [2021.11.17., 일부개정] 제52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한울’
- [2022.08.01., 전면개정] 제53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라움’
- [2023.01.05., 전면개정] 제54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바우’
- [2023.10.05., 부분개정] 제54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바우’
- [2024.01.17., 부분개정] 제55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솔찬’